

#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전문제정 2018.12.04. 개정 2019.09.16.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총장의 경륜을 학교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본교의 전임총장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.

## 제3조 (추대절차)

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총장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의 후 이사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한다.

## 제4조 (역할)

명예총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.

- ①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과 조언
- ②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

## 제5조 (예우)

- ① 명예총장은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
- ② 명예총장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여비규정 및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에 의거 교원에 준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9.09.16.>

부 칙(2018.12.04.)

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